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개발)

## 기획의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유산의 역할

####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구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모인 총회에서 합의한 것이 바로 「우리들 세계를 변형시키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sup>1</sup> 여기에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17개 상위 목표와 169개 하위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 즉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넓은 범위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sup>2</sup>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은 본질적으로 상호 통합적인 동시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을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빈곤의 근절, 건강, 교육, 식품안전, 영향 등과 같은 발전의 우선적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경제·사회·환경적 목표를 포함한다.<sup>3</sup>

「우리들 세계를 변형시키기: 지속가능한 발

1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들 세계를 변형시키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다. 이 문서가 채택되기까지 193개 회원국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수많은 회의가 열렸고 목표의 개수와 내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2 여기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2000~2015)가 미처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빈곤이라는 문제로 그 범위를 한정된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환경보호, 사회적 정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p.6.



전을 위한 2030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제시하는 상부 목표 17개 중에서 9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의 역할을 완전히 통합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성하는 삼대 요소 -경제, 사회, 환경-에 문화를 추가하여 이른바 지속성의 권역(Circle of Sustainability)을 완성하려는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을 다소 부족하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른 영역 -경제, 사회, 환경-에 인간성과 창의적 사고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의 역할을 가장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1번째 상부목표(goal) 아래 4번째 하부목표(target)이다. 11번째 상부 목표는 “도시들과 인간 거주지들을 포용적이고 안전한 동시에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다.<sup>4</sup> 4번째 하부 목표는 “세계 도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다.<sup>5</sup>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문화유산은 기념물이나 문화재를 넘어 역사 환경(historic environment)이나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UNESCO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유산의 기여를 논의함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 분야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sup>6</sup>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의제를 실제로 실현할 때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현실, 능력, 발전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별로 중시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존중해야

한다.<sup>7</sup> 지구 전체적 차원, 그리고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되는 국제적 규칙과 공약을 준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정책 공간에 기초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은 비로소 국가적인 수준의 행동이나 조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sup>8</sup> 모든 국가는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이 국가적 수준의 계획, 정책, 전략 등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는 제각기 지구적 수준의 기준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기 고유의 실정에 적합한 세부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기 고유의 현실, 능력, 발전의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유산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확장

“우리들 세계를 변형시키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하여 광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의 목표로 설정되기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공공영역(public realm)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80년 「자연과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국제연합(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4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5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Target 11.4.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6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미 「UNESCO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2003년 협약(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2015년 9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결정된 다음에는 「UNESCO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2003년 협약(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실행을 위한 「UNESCO 운영 강령(Directive)」에 “국가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항으로 2016년 포함시켰다(ICH Courier online: Intangible Heritage Courier of Asia and the Pacific).

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Ibid, p.3.

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Ibid, pp.6~7.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을 때였다.<sup>9</sup> 이 보고서는 생물자원의 보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은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논제와 경제적 논제를 상호 연결시키기 보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었으므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일보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제시한 것이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 특히 「세계의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 간행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일명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라고 불리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널리 인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가 소개되어 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는 세대 간 욕구의 균형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갔다.<sup>10</sup>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sup>11</sup> 이러한 정의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는 골격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려면 경제발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극단적으로 확장된 결과 환경의 질과 경제발전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강하는 관계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환경과 발전이 상호 보완적인 목표인가?”로부터 “환경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의 형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로 이동하였던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회·정치적 개념으로 간주하면 ‘지속가능한(sustainable)’과 ‘발전(development)’이라는 두 가지 용어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의 의미를 동시에 반영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속가능성은 원래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이라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러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일정한 목표나 한계를 가지는 발전,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회변화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것이다.<sup>13</sup>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회·정치적 구성물로 이해한다면 「브룬트 보고서」 이후 계속 진화해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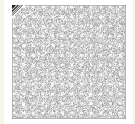
9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공해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는 시기로 이때에는 성장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 것이 1972년 ‘로마 클럽(Club of Rome)’이 발표한 「성장에 대한 한계(The Limit to Growth)」라는 보고서였다. 그 후 “성장에 대한 한계”라는 주장은 널리 비판을 받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반드시 상호 대립하지 않고 상호 병립이 가능한 목표라는 주장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관점을 언급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Baker, Susan et. al. eds., 1997, *The Polit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Practice within the European Union*, New York, Routledge, p.2).

10 Sachs, Jefferey D., 2015,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5~6.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합적 개념은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Rio Earth Summit)」를 포함한 공식 석상에서 널리 채택되는 동시에 그 의미 또한 계속 확장되어 나갔다. 2002년 남아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유엔 정상회의(UN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삼대 구성 요소 - 경제 발전, 사회 발전, 환경 보호 - 가 상호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WSSD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을 망라하는 전체론적 견해는 「리우 지구 정상회의(Rio Earth Summit)」(1992)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리우+20 정상회의(Rio+20 Summit)」(2012)에서 다시금 강조되었다.

1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p.5.

12 Baker, Susan et. al., 1997, *Ibid*, pp.2~3.

13 Baker, Susan et. al., 1997, *Ibid*, p.6. 다시 말해서,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은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 과정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 입안자들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범위를 넘어 건강, 교육, 사회복지 등과 같은 관심사를 언급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들은 제 각기 자기 고유의 종교, 철학, 역사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령 민주주의, 자유, 사회적 정의와 같은 개념들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sup>14</sup> 이러한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방향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회·정치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과 방향으로 문화유산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문화유산이라는 개념과 범위의 확대

오늘날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은 발전의 다양한 차원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통합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를 위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골조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2005)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또는 생태적 논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논제가 되며 문화유산의 보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 어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에 기여한다. 이러한 협약은 일명 「파로협약(Faro Convention)」이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공동체의 생존에 유리한 사회·환경·경제적 조건을 조성하는데 문화유

산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조명하고 있다.<sup>15</sup>

「파로협약(Faro Convention)」은 문화유산의 관례적 정의를 넘어 상이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사고가 발전한 결과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문화유산은 사람들과 장소가 오랫동안 상호작용한 결과의 산물인 환경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과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물론이고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이 정의되고 있는 역사환경(historic environment)이 포함된다. 실제로 UNESCO,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에 의해 문화유산의 공간적 차원은 기념물(monument)이나 지점(site)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로부터 지역(area)이나 경관(landscape)을 거쳐 역사환경(historic environment)이나 장소(place)로 확장되어 왔다.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1964)에 의하면, 기념물(monument)은 건물이나 아니나를 막론하고 고고학·건축학·역사학·민속학적인 의미를 가진 재산(property) 일체, 그리고 때로는 재산 내부에 보존되어 있는 가구들을 포함한다.<sup>16</sup> 지점(site)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아니면 자연·인위적으로 형성된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공적 행위를 통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후 1968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15차 총회에서는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을 따르지 않고 기념물(monument)과 지점(site)을 대체하는 용어로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정의하였다.<sup>17</sup>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를 다

14 Baker, Susan et. al., 1997, Ibid, pp.6~7.

15 이는 2005년 포르투갈 소도시 파로(Faro)에서 개최된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2005,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에서 비준되었으며, 유럽 국가들에게 유산 정책의 기초 골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 Ahmad, Yahaya, 2006, “The Scope and Definitions of Heritag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12 No.3, pp.293~294.

17 Ahmad, Yahaya, 2006, Ibid, pp.293~294. 여기에서 채택된 것이 「공적이나 사적인 공사로 인해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이었다.

시 동산문화재(movable cultural property)와 부동산문화재(immovable cultural property)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동산 문화재는 박물관 수집품인 반면 부동산문화재는 건축 유산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그리고 부동산문화재는 전통적 구조물의 집합, 도시와 농촌의 역사지구(historic quarter), 그리고 재산의 입지(주변)환경(setting)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sup>18</sup>

이러한 의미의 문화재는 결국 1972년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협약(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통하여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sup>19</sup> 이 협약은 유산을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라는 용어는 폐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정의는 기념물과 지점(site)은 물론이고 건물의 집합, 그리고 도시의 입지(주변)환경(setting)을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보장하려는 조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201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통하여 강조되었다.<sup>20</sup> 결국 대체로 유산의 범위는 환경뿐만 아니라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다.<sup>21</sup>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부터 '무형문화재'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므로 세계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모색하기에 훨씬 유리한 현실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 4.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정책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 세계를 변형시키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정책은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할까?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문화유산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유산 분야의 발전 방안은 무엇일까? 특집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개발)”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관리 분야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역사(문화)환경, 고고학, 건축, 무형문화유산 등과 같은 관점에서 넓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유산의 관계, 그리고 좁게는 문화유산 그 자체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환경의 관계”와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은 전자에 해당하는 반면, “살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전자와 후자의 중간, 그리고 “매장문화재부담금

18 Ahmad, Yahaya, 2006, Ibid, pp.293~294.

19 기념물(monument)은 건축물, 기념적 조각물과 회화, 고고학적 요소나 구조물, 암각화, 동굴 주거지 등이며, 지점(site)은 인간의 작품이나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지점을 포함하는 지역(area)이다. 그리고 건물의 집합은 별개 건물이나 연결된 건물의 집합으로 경관 전체에서 일정한 동질성을 구성하거나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문화재라는 용어가 원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세계유산을 등재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편의상 문화유산을 문화재(cultural property), 그리고 자연유산을 자연재(natural property)라고 지칭하고 있다(UNESCO, 1999, “Operational Guidelines”).

20 여기에는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 집단,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실천, 재현, 표현, 지식, 기술,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21 과거에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건물, 기념물, 인공물(artefact) 등과 같은 물리적 잔존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통, 언어, 방언, 음악 양식, 종교적 또는 통속적 제의는 물론이고 장소의 특성이나 ‘느낌(feel)’을 포함하는 무형적 유산까지 포함하고 있다(Shofield, John, 2008, “Heritage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in Graham Faircough et. al.(eds.), *The Heritage Reader*, p.19).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현황과 과제”는 상기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환경의 관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목표의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체론적 입장을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침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의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하여 정부 각 부처의 법령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에서는 상기한 바 있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을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실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 동안의 개발 성과를 계승하여 보다 더 성숙한 개발의 단계로 나간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결합하는 무형문화유산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살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공동체”에서는 이제는 한국에서도 지역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도시,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옥 거주지와 한양 도성주변 성곽마을을 사례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역사경관의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도시 조직의 보존 노력이 가능한 신중한 정책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매장문화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ODA 현

황과 과제”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 ODA(공적 개발 원조)는 인접 국가인 일본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나열식 지원을 탈피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류제헌(한국교원대학교)

## 참고문헌

- Ahmad, Yahaya, 2006, "The Scope and Definitions of Heritag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2 No. 3
- Baker, Susan et. al. eds., 1997, *The Polit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Practice within the European Union*, New York, Routledge
- Council of Europe, 2005,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 Sachs, Jefferey D., 2015,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ofield, John, 2008, "Heritage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in Graham Faircough et. al.(eds.), *The Heritage Reader*
- UNESCO, 2016,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H Courier onl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rier of Asia and the Pacific*
- UNESCO, 2016, "Linkages between ICH Safeguarding and the SDGs: UNESCO's Action," *ICH Courier onlin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rier of Asia and the Pacific*
- UNESCO, 201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UNESCO, 1999, "Operational Guidelines."
- UNESCO, 1972,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UNESCO, 1968,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